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규정

[규정 제2019-039호][시행 2020. 1. 1][2019. 12. 9, 일부개정]

2014년 2월 7일 제정
2014년 12월 3일 개정
2015년 11월 10일 개정
2016년 12월 7일 개정
2017년 12월 11일 개정
2019년 8월 2일 개정
2019년 12월 9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공제”라 한다)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 또는 손실발생 가능성(이하 “리스크”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스크관리”라 함은 리스크의 발생원천을 파악하고, 그 규모의 측정 및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리스크를 회피, 축소 또는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말한다.
2. “운용부서”라 함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및 기타 거래 등을 수행하는 자산운용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자산운용 업무를 행하는 부서와 독립되어 리스크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신용리스크”라 함은 발행기관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도 하락, 채무불이행 등으로 투자금액의 회수가 어렵거나 투자자산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5. “시장리스크”라 함은 금리, 주가 및 환율 등 시장가격의 불리한 변화로 인하여 보유 자산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6. “유동성리스크”라 함은 예상치 못한 자금유출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유자산의 해지 및 불리한 매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7. “운영리스크”라 함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시스템의 오류, 직원의 실수 및 부정 등으로 인하여 공제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8. “벤치마크”라 함은 목표달성을 위해 설정하는 평가단위에 대한 평가측정 기준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그 밖의 법령, 관련 제규정 및 일반적으로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통용되는 정의의 순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공제의 리스크관리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및 운용요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리스크관리의 실무적인 집행을 위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요령에 따른다.

제4조(리스크관리 원칙) ①공제의 리스크관리는 자산운용의 모든 업무가 관련 법 및 규정 등이 정하는 관리·운영원칙 등에 부합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제자산운용의 수익은 리스크의 적절한 허용·관리를 통하여 창출되므로 리스크를 정확하게 인식·측정하며 관리·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허용된 리스크에 관해서는 수익 대비 과도하거나 추가적인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공제의 리스크관리는 운용부서가 일차적으로 수행하며, 주관부서는 리스크관리업무를 총괄하고 통제한다.

제5조(리스크의 인식 및 측정) ①리스크의 인식은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와 관련된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는 업무 및 자산운용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식하는 리스크는 계량화가 가능한 경우 시장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 및 통계치를 근거로 측정한다.

제6조(허용위험의 설정) 자산운용계획 수립시 허용위험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 등 합리적인 지표보다 하회하지 않을 확률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제 2 장 리스크관리조직

제7조(조직운영원칙) ①공제자산운용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주관부서는 운용부서와 반드시 독립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③운용부서는 리스크가 발생하는 부서로서 수시로 제반 리스크를 검토하고 법 및 제규정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며, 수행사항에 대하여 공제사업단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주관부서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는 운용부서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모니터링, 집계, 분석 등을 수행하며 이를 관리하고 적절히 통제하여야 한다.

제8조(리스크관리위원회) ①공제자산운용에 따른 리스크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풀(Pool)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제3호와 제4호의 외부위원은 외부전문가 풀(Pool)제로 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와 「보안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1.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개정 2019.8.2>

2. <삭제 2016.12.7.>

3. 공제·금융·보험·학술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리스크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리스크관리 담당임원이 위촉하는 자 6인 이내 <개정 2019.8.2>

4. 대체투자 관련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실물(부동산, SOC, 자원 등), 기업(PE, 인수금융, 벤처 등) 및 법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리스크관리 담당임원이 위촉하는 자 8인 이내 <개정 2019.8.2>

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경력·학력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이력이 있는 경우
 2. 위원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제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한 경우
- ⑥선정된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 ⑦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단, 개별 회의의 재적위원은 위원장, 제3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 1인과 안전 특성 및 위원의 전문 분야에 따라 외부전문가 풀(Pool) 중 매 회의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외부위원 5인을 포함한 총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9>**
- ⑧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리스크관리 기본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2. 리스크한도 설정·관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험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위기상황에 대비한 긴급대책의 수립
 6. 이 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리스크요인별 한도 초과에 관한 사항
 2. 신용등급 기준을 하회한 투자에 관한 사항
 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요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이 규정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⑩회의는 매 분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⑪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는 주관부서장이 되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며,** 심의 및 의결사항을 운용부서에 통보하여 자산운용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9>**

1. 소집일시

2. 출석위원 및 기타 관련자의 성명

3. 심의안건 및 출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4. 심의내용 및 출석위원 심의·의결 결과

⑫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중앙회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⑭위원은 심의·의결 등의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를 회피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위원의 회피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은 이해관계 정도를 고려하여 그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1. 제1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⑮위원장은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라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의견이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련자와의 계약해지, 선정취소, 거래제한 또는 위원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⑯위원회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9.12.9>

⑰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간사는 위원장에게 개최안을 보고하고, 참석대상 위원에게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건의 주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9.12.9>

⑱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12.9>

제9조(주관부서) ①리스크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는 각종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주관부서를 설치·운영한다.

②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리스크의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3. 리스크의 측정, 평가 및 조정기능 수행
 4. 관련 부서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사항 통지 및 사후관리
 5. 리스크관리기법 연구 및 인프라 구축·운영
 6. 그 밖에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관부서는 운용부서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용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 ④주관부서는 정치·경제적인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시장상황이 급변하거나 급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용부서에게 손실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신용리스크 관리

- 제10조(신용리스크 관리)** ①신용리스크의 관리대상은 발행기관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변화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자산으로 한다.
- ②신용리스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총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Credit VaR 한도 설정·관리
 2. 투자대상에 대한 금액, 만기 등 한도 설정·관리
 3. 자산건전성 유지와 안정된 수익 확보 및 신용리스크 최소화
- ③운용부서는 발행기관 및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신용상태 악화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소 등을 포함한 보유자산의 위험요인 및 부실징후 점검
 - 가. 신용평가기관의 등급 속보
 - 나. 시가평가 현황(동일등급, 만기 대비 해당종목의 하락폭 등)
 2. 위탁 운용자산의 부실채권 보유내역 및 처리방안
 3. 그 밖에 신용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④운용부서는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신용도 하락 및 재무상태 악화 등 이상 징후로 보유자산의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상 징후 해소 전까지 해당 종목 및 동종의 신규자산 매입 제한

2. 다른 상품으로 교체 운용

3. 발행기관 및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하락 등으로 원리금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매도 또는 해지, 다만 시장상황으로 즉시 매도 또는 해지가 어려울 경우 사후관리 방안 마련

⑤주관부서는 관련 위험요인, 수준 및 한도 등을 분석하고 운용부서의 대책을 취합하여 위원회에 보고 후 심의·의결결과를 운용부서에 통보하고, 운용부서는 결정사항을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포트폴리오 신용리스크 점검·관리) ①주관부서는 포트폴리오의 신용리스크 측정을 위하여 허용위험한도를 설정하고 Credit VaR를 월간 단위로 측정하여 한도 초과여부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측정된 Credit VaR의 허용위험한도 소진율을 점검하여 소진 정도에 따라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관리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주기적으로 신용리스크량의 측정결과, 한도 소진 현황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신용등급의 적용) ①국내신용등급은 국내 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②해외신용등급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Standard & Poor's, Moody's Investors Service, Fitch Ratings를 말한다)이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제13조(채권투자신용등급) ①국내채권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국내신용등급이 A0(기업어음의 경우 A2+) 이상인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익성 및 안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BBB+(기업어음의 경우 A2-) 이상인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이하 “특수채”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하 “은행채”라 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하 “여신금융채권”이라 한다)
 4.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하 “회사채”라 한다)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ABS)”이라 한다)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발행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하 “주택저당채권(MBB)”이라 한다)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주택저당증권(MBS)”이라 한다)
 7. 기업어음(CP) 또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8. 전자단기사채(STB) 또는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9.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② 해외채권 중 다음 각 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신용등급이 BBB0(또는 Baa2) 이상인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내 또는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기관(정부가 투자, 후원 또는 채무의 상환을 보증하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외화표시채권
 2. 세계은행 또는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외화표시채권
 3. 국내 또는 외국의 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으로서 제1항제1호부터 제6호 및 제9호의 성질을 구비한 것
- ③ 보증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과 발행기관의 국내 및 해외신용등급 중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④ 후순위채권 또는 신종자본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신용등급이 국내 금융기관 AA0, 국내법인 AA+, 해외기관은 해외신용등급이 A+(또는 A1) 이상이어야 한다.
- ⑤ 금리, 신용, 주가(지수를 포함한다), 상품 및 통화 등의 준거자산 가치에 연계되어 가치가 변동되거나 파생상품이 내재된 증권(이하 “파생결합금융상품”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신용등급이 국내은행 AAA, 국내증권사 AA0, 해외금융기관은

해외신용등급이 A0(또는 A2)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회사채 등에 대한 한도설정) ①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투자대상(“회사채 등”이라 한다) 중 신용등급이 국내채권은 AA+ 이하, 해외채권은 A+(또는 A1)이하인 경우 별도의 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운용부서는 수익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채권 종류, 발행기관, 금액 및 만기별 한도를 설정한 투자가능종목군(이하 “신용채권투자유니버스”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신용채권투자유니버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리스크관리요령을 따른다.

제15조(파생결합금융상품 거래상대방 관리) ①파생결합금융상품의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기관별 거래가능 여부 및 한도 등을 부여·관리한다.

②파생결합금융상품의 기관별 거래가능 여부 및 한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리스크관리요령을 따른다.

제 4 장 시장리스크 관리

제16조(시장리스크 관리) ①시장리스크의 관리대상은 주가, 금리 및 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자산으로 한다.

②시장리스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총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Market VaR 한도 설정·관리
2. 시가평가 모니터링을 통한 자산가치 변동 측정·관리
3. 거래손실을 일정범위 내에서 통제하기 위한 손절매(Loss-cut) 한도의 설정·관리

③운용부서는 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주가, 금리, 환율의 변동에 의한 보유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의 괴리율
2. 주가, 금리, 환율에 관한 합리적인 예측에 의한 시장 전망
3. 그 밖에 시장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운용부서는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장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상 징후로 보유자산의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상 징후 해소 전까지 해당 종목 및 동종의 신규자산 매입 제한
2. 다른 상품으로 교체 운용
3. 시장상황 급변 등에 따른 가격 급락으로 원리금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매도 또는 해지, 다만 시장상황으로 즉시 매도 또는 해지가 어려울 경우 사후관리 방안 마련

⑤주관부서는 관련 위험요인, 수준 및 한도 등을 분석하고 운용부서의 대책을 취합하여 위원회에 보고 후 심의·의결결과를 운용부서에 통보하고, 운용부서는 결정사항을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포트폴리오 시장리스크 점검·관리) ①주관부서는 포트폴리오의 시장리스크 측정을 위하여 허용위험한도를 설정하고 Market VaR를 월간 단위로 측정하여 한도 초과여부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측정된 Market VaR의 허용위험한도 소진율을 점검하여 소진 정도에 따라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관리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주기적으로 Market VaR의 측정 결과, 한도 소진 현황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손절매) ①단기매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취득원가 대비 시가평가액이 3% 이상 하락시 10영업일 이내에 매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투자하고 있는 직접운용 주식의 시장평가액이 취득원가 대비 30% 이상 하락시 10영업일 이내에 매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투자하고 있는 위탁운용 주식의 시장평가액이 취득원가 대비 20% 이상 하락시 10영업일 이내에 매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7.12.11>

④제1~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운용부서의 요청에 따라 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 협의를 거쳐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용부서는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처리계획 등을 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1>

⑤운용부서는 제4항에 따라 보유하는 종목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신용등급 및 재무상황 등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리스크의 발생가능성을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주관부서

는 보유 종목에 대한 리스크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1>

제 5 장 유동성리스크 관리

제19조(유동성리스크 관리) ①유동성리스크 관리대상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산과 부채부문의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②유동성리스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주기적인 자금 예측·점검에 따른 적정 유동성 분석
2. 유동성리스크 한도 관리
3. 시장 유동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운용

③운용부서는 유동성자금 부족에 의한 지급불능 위험 및 예상치 못한 자금유출 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조건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장단기 자금수급계획
2. 자산·부채의 기간별, 금액별 구성 규모
3. 유동성리스크에 대비한 단기 유동성자산의 보유 수준

④운용부서는 유동성리스크의 관리를 위하여 상품투자시 대상종목의 재무구조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유동성 관리) ①운용부서는 연간 자산운용계획 수립시 적정 유동성자금 규모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단기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단기자금 운용계획을 집행하면서 월별 자금의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변동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계획대비 집행률을 점검하고, 차이분석 및 수지현황 등을 검토하여 위기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금융자산 투자 제한) ①금융자산 운용의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 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발행기관 자기자본의 30% 이내(AAA는 50% 이내)

- 나. ABS, MBB, MBS는 동일기관 발행총액의 70% 이내
 - 다. 주식관련채권은 발행기관 자기자본의 10% 이내
 - 라.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은 발행기관 자기자본의 5% 이내
 - 마. 동일회사에 대한 한도는 보유자산의 10% 이내
 - 바. 동일그룹집단에 대한 한도는 보유자산의 20% 이내(동일업종 30% 이내)
2. 주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
- 가. 반기 일평균 거래대금 3억원 미만 종목 제외
 - 나. 시가총액 500억원 미만 종목(코스닥 200억원 미만) 제외
 - 다.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
 - 라. 다만, 회생절차 등 기업 구조조정에 의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②단기자산은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되, 금리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이 크지 않은 상품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 6 장 운영리스크 관리

- 제22조(운영리스크 관리)** ①운영리스크 관리대상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 등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는 일련의 과정으로 한다.
- ②운용부서는 운영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하여 업무프로세스 상의 리스크를 인식 및 통제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리스크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③주관부서는 운영리스크를 관리하고 리스크 경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23조(체크리스트 점검)** ①운영리스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관부서는 리스크 요인별 체크리스트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②자산운용 업무 담당자는 업무수행시 제1항에 따른 체크리스트 점검을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리스크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주관부서는 체크리스트 점검 현황을 관리하고, 누락, 위반 등 주요사항 발생시 위원회에 보고 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7 장 비상위험관리대책

제24조(비상위험관리대책의 수립) ①주관부서는 금융위기 등 예상치 못한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위험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지표 모니터링을 통한 위기 인식 및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관리대책은 자산운용에 발생하는 각종 위기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계 및 이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전략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위기상황 발생과 밀접한 지표를 선정하여 조기경보지표로 활용,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제25조(위기상황 단계별 대응) ①주관부서는 조기경보지표의 변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상황별 단계를 설정하고 해당상황 발생시 운용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주의단계 : 지표의 수준이 위기상황에는 미달하나 이에 근접해가는 상태로서, 보유 포트폴리오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는 단계
2. 경계단계 : 지표의 수준이 위기상황에 근접한 상태로서, 사전 보유 포트폴리오 헤지(Hedge)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는 단계
3. 위기단계 : 지표의 수준이 위기상황임을 나타내는 상태로서, 금융자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하는 단계

②운용부서는 위기상황별 단계에 따라 보유 포트폴리오 점검 및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1. 주의단계 : 분석보고서 작성 및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 보고 <개정 2019.8.2>
2. 경계, 위기단계 : 분석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보고 후 대책 마련

제 8 장 성과평가

제26조(성과평가의 원칙) ①성과평가는 공제자산의 운용성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신뢰를 확보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자산운용의 개선과 발전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성과평가는 연간 자산운용계획 수립시에 설정한 운용기간별, 운용상품별 기준

포트폴리오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③성과평가를 위하여 적절한 벤치마크지수를 적용하며,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하여야 한다.

④성과평가는 현업부서와 독립된 별도의 조직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성과평가에 사용되는 수익률은 자산의 성격에 따라 시간가중수익률, 금액가중수익률, 평잔수익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성과평가의 주기) ①성과평가는 자산운용의 실적을 기준으로 분기, 반기, 연간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연간 자산운용 성과평가는 다음연도 3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28조(성과평가 결과 보고) ①성과평가의 결과는 회장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기 : 공제사업단장
2. 반기 : 위원회
3. 연간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

②위원회는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운용부서는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29조(보고 등) ①주관부서는 자산운용의 리스크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제사업단장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1. 운용현황 및 변동사항
2. 제규정의 준수여부 및 점검사항
3. 보유자산의 신용등급 하락 등 주요 신용위험 현황
4. 기타 리스크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②운용부서는 자산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공제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거래중개사 선정) ① 자산운용에 따른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래중개사 선정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② 거래중개사 선정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리스크관리요령을 따른다.

부 칙 <2014. 2.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10>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1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9>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신설 2019. 12. 9>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별지 제2호> <신설 2019. 12. 9>

보안 서약서(개인용)

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_____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맡은 업무 및 관련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제반 사항이 중소기업중앙회의
비밀 또는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일체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2. 나는 맡은 업무 및 관련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기밀사항, 타인의
개인정보 등 일체를 전산 및 통신(전화, 팩스, 무선 등)기기를 이용하여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3. 나는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인정하며,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중소기업중앙회 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부 서		직 책	
생년월일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중소기업중앙회	부 서		직 책	
성 명	(서명)				